

2023년 제2회 남동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재공고(4차) [상담전문요원]

2023년 제2회 남동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(4차) 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23년 5월 1일

남동구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임용예정분야 및 인원

근무예정 부서	임용 분야	임용 직급	임용 기간	채용 인원	주요업무내용
보육정책과 (육아종합 지원센터)	상담전문요원	시간선택제 임기제 「마」급	임용일로부터 1년 (주35시간)	1명	○ 부모 양육 및 아동발달 관련 상담 ○ 보육교직원의 심리적·정서적 고충 상담 ○ 센터에서 정한 기타 업무

*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(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) 규정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.

2. 근거법령

- 지방공무원법
- 지방공무원 보수규정
- 남동구 공무원 인사 규칙
- 지방공무원 임용령
-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

3. 응시자격 요건

가. 공통요건 (기준일 : 최종면접일)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,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1. 공공기관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※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

나. 개별요건 (자격 기준일 : 최종면접일)

임용분야	개 별 요 건
상담전문요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성 별 : 제한없음 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 ○ 연 령 : 18세 이상인 자 (2005.12.31. 이전 출생자) ○ 지 역 : 제한없음 ○ 자 격 :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관련분야 실무경력 : 병원, 대학 등 학교, 상담센터 및 심리연구소, 복지시설 등에서 심리상담, 심리검사, 심리평가, 심리치료 등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 * 우대사항 :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, 보육업무에 대한 경력이 있는 경우 우대

※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 범위 :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, 담당업무,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, 전임근무(1일 8시간)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 예정 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함 (예시 : 주20시간 근무)

4. 선발 방법

○ 1차 : 서류전형

-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에 대한 기준 적합 여부 심사(적격 또는 부적격)
 - ※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○ 2차 : 면접시험

-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
-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전체 면접위원의 평정점수 합계가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
 - ※ 평정요소 : 공직자로서의 정신자세(20점)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(20점)

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(20점), 예의·품성과 성실성(20점)
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(20점)

※ 불합격 기준 :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“하”로 평정한 경우와,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“하”로 평정한 경우

5. 시험 일정

응시원서접수	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면접시험	최종 합격자 발표
2023.5.22.(월) ~ 5.24.(수)	2023.5.30.(화) (예정)	2023.6.12.(월) (예정)	별도공지

- ※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, 최종합격자 발표는 [남동구 홈페이지 \(www.namdong.go.kr\)](http://www.namdong.go.kr) > [고시/공고](#) > [남동구 채용공고](#)에 게시
- ※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하며, 추후 일정은 바뀔 수 있음.
- ※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,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6.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3. 5. 22.(월) ~ 5. 24.(수) / 3일간
 - ※ 기간 중 업무시간 09:00 ~ 18:00 내 (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
-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우편접수
 - 주소 :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(만수동), 남동구청 총무과 인사팀
 -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(우체국 통상환증서) 동봉
 - ※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만 인정 (등기 발송 요청)

※ **우편접수는 반드시 채용 담당자에게 사전에 유선 연락 (032-453-2195)**

※ 우편접수 경우 응시표는 이메일 발송 예정

※ 대리접수 가능

7. 제출서류

① 응시원서 1부.

② 이력서 1부.

③ 자기소개서 1부.

④ 직무수행 계획서 1부.

※ 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

⑤ 해당분야 자격증(면허증) 사본 1부 (원본 지참)

⑥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(재직, 학력)증명서 각 1부 (사본 가능)

※ 재직기간, 인사 변동사항, 직위, 담당업무 등 기재

※ **증명서는 최근 6월 이내 발행분으로 발행기관의 직인, 발급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**

※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(면접시험)시험 예정일 기준

※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 함.

(근무기간, 직위(급), 담당업무가 명시)

※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, 프리랜서, 자원봉사,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관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,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

※ 경력의 계산은 최종(면접)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, **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 하여야 함**

⑦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.

※ 국민건강보험공단(www.nhic.or.kr)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

- ⑧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.
- ⑨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.
- ⑩ 응시수수료 : 남동구 수입증지 첨부(남동구청 1층 민원봉사과 8번 창구)
 - 시간선택제임기제 「마」급 : 5,000원

<<서류 제출시 유의사항>>
 ○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(졸업증명서 등)는 반드시 한글번역본 첨부.(공증 필)

8. 보수수준

임용분야	임용직급	급 여	급여외	비 고
상담전문요원	시간선택제임기제 「마」급	연 21,892천원	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에 따른 수당 별도 지급	

※ 「고용보험법」 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(실업급여)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(단,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9. 합격자 결정 등

○ 동점자 처리기준

- ① 면접위원 전체 평정 성적(상,중,하)을 집계하여 “상”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(“상”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, “중”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)
- ② 위의 기준에 의거하여 결과가 같을 경우 관련(해당)분야 경력이 많은 순으로 결정

○ 추가합격자 결정

- 최종합격된 사람의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, 임용 후 즉시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.
- 추가합격자의 경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의 차점자로 결정할 수 있음.

10. 기타 사항

- 보수 및 복무는 「지방공무원 보수 규정」 및 「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 등을 적용합니다.
- 제출한 원본 서류는 요청 시 반환하며,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-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- 기재(제출)한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제출 요구한 서류 이외 첨부되는 불필요한 서류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.
-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안내(지방공무원법 제56조)
 - 지방임기제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,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므로 기존 영리·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※ 채용절차 관련문의 : 총무과 인사팀 (032-453-2195)
 - ※ 담당업무 및 보수 등 관련문의 : 보육정책과 출산장려팀 (032-453-8364)

***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**